

수업결과물 저작권에 관한 지침

제정	2016.03.01.
개정	2018.03.26.
개정	2020.05.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수업 및 비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창작활동을 장려함과 아울러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권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 및 학생을 말한다.
3. ‘공동저작권’이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2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이 공동으로 창작에 기여하여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저작권을 말한다.
4.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그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저작권법을 준용한다.

제3조(저작권의 귀속) ① 수업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해 제작한 저작물의 경우 해당 학생이 저작권을 가진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이 일반적인 지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창작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창작으로 보고, 학생과 교직원이 공동저작권을 가진다.

제4조(저작권의 영리적 이용)

①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수익은 저작권자에게 귀속한다. 단 제3자와 협력하여 얻은 저작재산

권 수익은 제3자와 배분할 수 있다.

- ②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①항에서 규정한 제3자로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발행, 공표, 전시, 방송 또는 공중송신 등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작권자는 그 발생수익을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과 5:5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②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수익의 종류, 범위, 수익발생 공헌도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그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저작권자가 원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그 저작물 제작 및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저작권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④항에 따라 저작물 제작 및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②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저작물의 제작, 취득, 복제, 배포, 공연, 발행, 공표, 전시, 방송 또는 공중 송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학협력단에 선 지급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수익 배분하여야 한다.
- ⑥ 저작권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④항에 따라 저작물 제작 및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완성한 저작물을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은 그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⑥항에 따라 본교 또는 본교의 산학협력단이 저작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수익배분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조(분쟁의 조정) 창작자가 본 지침과 관계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본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항)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저작권의 비영리적 이용) 본교와 본교의 산학협력단은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를 저작권자에게 받아야 한다.

제8조(저작권자의 의무)

- ① 저작권자는 재학(직) 중 발생하는 수업결과물과 프로젝트결과물 등 제작 완료된 제품에 학교명을 명기할 의무가 있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이용허락자 _____(이하 “권리자” 이라 함)와 저작권 이용자 _____(이하 “이용자” 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에 관한 저작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 중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로 한다.

- 저작권명:
- 저작자:
- 종 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기타()

- 권 리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¹⁾ 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년 __월 __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도 이용허락 기간으로 적용한다.

1)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예컨대,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 대표적인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제4조 (권리자의 의무)

-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 (2)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자료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요청하면 이용허락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 (3)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에 제3자의 이용허락권,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4) 권리자는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1)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을 제3조의 이용허락 기간 동안 제2조의 이용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2) 이용료는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input type="checkbox"/> 정액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_____원
		<input type="checkbox"/> 분할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예: 월) _____원
	<input type="checkbox"/> 정률	<input type="checkbox"/>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매출이익	_____%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시기	<input type="checkbox"/> 일시금	_____년 _____월 _____일
	<input type="checkbox"/> 분할	- 1차 :
		- 2차 :
		- 3차 :
<input type="checkbox"/> 정기지급	<input type="checkbox"/> 월 :	
	<input type="checkbox"/> 분기 :	
	<input type="checkbox"/> 년 :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의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이용자는 관례적으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 표시를 허용하는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대상저작물의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사

소한 수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이용허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2) 이용자는 권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 이용허락권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이용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2. 대상저작물을 제3자의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지)

-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 (1) 권리자와 이용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 년 월 일

○ 권리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 이용자

성 명(상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 소: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서

저작권자 정보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저작권 표시

저작권명	
상세정보	

이용허락 동의

1. 저작권 사용에 공익,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2. 저작권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저 작 자: (서명)